

의 정 정 보

2010 - 1 1. 11.

Ⅰ.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3
Ⅱ.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16
Ⅲ.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37
Ⅳ.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56
<부록> 행복한 책 읽기	76

▣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1. 국회의원 친목단체의 ‘사랑의 연탄나눔행사’	—	3
2. 한국교총 회장의 대담·좌담·칼럼 등 수록 책자 배부·판매	—	4
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	—	6
4. 당원의 개인 블로그에 소속정당 배너 게시	—	8
5. 신고가 지연된 인터넷광고 비용의 보전	—	9
6. 월간잡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터뷰 기사 게재	—	10
7. 소방방재청의 화재예방 캠페인시 소화기 기증 등	—	11
8. 「공직선거법」 제86조제6항의 공공기관의 범위	—	12
9. 정당과 시민단체간 선거공조 등	—	13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1 국회의원 친목단체의 ‘사랑의 연탄나눔행사’

《질 의》

국회의원 친목단체인 “국민통합포럼”에서 ‘사랑의 연탄나눔행사’ 개최 (12. 14~16 중 택일)를 준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1.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국민통합포럼 회원 국회의원들이 모여 연탄을 배달하는 행위의 가능 여부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
2. 회원인 국회의원들이 단체사진 촬영 시 국민통합포럼 현수막 사용 가능 여부
3. 국민통합포럼에서 지역 구청 및 사회복지단체에 연탄구매비용 또는 연탄을 기증하고 회원들이 자원봉사차원으로 배달봉사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4.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의 협조를 받아 해당 구청의 사회복지과 및 사회복지단체에 기증을 통한 연탄 지원 가능 여부 (2009. 12. 8. 국회의원 권경석 질의)

《답 변》

1. 문 1·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 또는 기관·단체·시설에 연탄을 기부하거나 기증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과정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등 같은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회원들이 단체 사진 촬영을 위하여 ‘국민통합포럼’ 명칭이

게재된 현수막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동 현수막에 정당의 명칭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임.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 마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2009. 12.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2 한국교총 회장의 대담·좌담·칼럼 등 수록 책자 배부·판매

《질 의》

2010년 6월 2일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교육감 선거와 교육의원선거가 함께 실시되게 됨에 따라 교육계에서도 선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이 관련 선거법을 준수하여 맑고 깨끗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더욱 필요하고 교육감·교육의원선거는 더욱 그러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교육기본법」 제15조와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에서는 2007년 7월 제33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원희 회장(2010년 교육감선거 출마 예정)이 재임 이래 현재까지 교육현안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신문(주간지)’, ‘새교육(월간지)’에서 교육계 및 주요 인사들과 마련한 교육대담·좌담내용과 각종 일간신문에 기고되어 보도된 칼럼, 특별인터뷰, 매주 1회씩 한국교총 회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전달된 메시지를 종합하여 책자로 출간·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은 사업자등록상 ‘출판/임대’ 종목으로 운영되며 한국교육신문사는 한국교총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정기간행물로 ‘한국교육신문(주간지)’, ‘새교육(교육전문 월간지)’, ‘새교실(월간지)’ 및 기타 단행본 등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신문사는 이전에도 사설모음집, 공모수기·콩트·사진모음집, 교원 문학상 수상작품집, 새교육 연재물을 모은 단행본(「만두모형의 교육관」·외부필자) 등을 발간한 전례가 있으며 대담·좌담, 칼럼, 인터뷰는 내용이 전례에 비추어 방대하고 대 회원 메시지 전달은 2007년 9월에 처음 시행한 것으로 이들을 체계화하여 교육효과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에 상기의 내용을 출판하기에 앞서 귀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리오니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또는 적법한지의 여부에 대해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 의 내 용 -

1. 한국교총·한국교육신문사가 판권을 소유한 가운데(비용부담) 한국교총 및 한국교육신문사 혹은 다른 출판사에 다음 내용의 출판물을 각각 출간하여 배포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 출간물 : 2종

- 대담·좌담집

- 교육노트 : 칼럼, 기자회견, 대 회원 메시지

2. 배포방법에 있어 경우에 따라 무료와 유료로 구분하여 배포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만약, 무료배포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면 유료배포는 가능한지의 여부

가. 무료배포 : 한국교총 내부조직

- 전국 시·도 및 시·군·구교총

- 한국교총 임원, 대의원

- 한국교총 각 위원회, 산하단체

나. 유료배포 : 일반인 대상

- 한국교총 및 한국교육신문사 명의로 출판해 일반 서점(온라인 판매 포함)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다른 출판사 명의로 출판해 일반서점(온라인 판매 포함)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009. 11. 2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질의)

《답 변》

귀문의 단체가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 없이 동 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판물을 발간하여 서점 등을 통하여 통상적인 가격과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이례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귀 단체 대표자의 대담·좌담, 칼럼, 기자회견 내용 등을 주로 수록한 간행물을 발간하여 입후보예정 선거구민이나 선거구안의 단체인 임원·대의원 또는 내부조직에 무료로 배부하는 것은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제113조·제114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09. 12.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

《질 의》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해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력은 도지사가 임용한 청장과 양 시·도(부산광역시, 경상남도) 파견 직원 및 계약직 직원으로, 예산은 양 시·도 분담금과 국고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청의 예산결산 및 재무사무는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집행기준을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귀 기관은 동 규칙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보조기관, 사업소장 등의 행위도 제한되는 것으로, 그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내

린바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운용센터-1524, 2009. 7. 17.)
명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은 아니지만,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 우리 청의 경우, 귀 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른 업무추진
비 집행 제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혹, 해당된다면 제한행위에 대
한 판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보조기관 등과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우리 청의 청장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양 시·도의 관할에 있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비후보자로 언론 상에 거론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 제한 사항

우리 청의 청장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언론 상에 수
차례 거론되고 있다면, 이를 선거 후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만
일 선거 후보 대상으로 본다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님에도 불구
하고 업무추진비 집행 제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집행 제한 대상자
가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구민 등으로 한정되는지 여부가 궁
금합니다. (2009. 12. 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 단체의 대표자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
는 자인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추진비 집행은 「공직선거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따라 제한될 것이며, 같은 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이면 족하고
그 의사가 확정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신분·접
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임(대법원 2004도
4698). (2009. 12.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4 당원의 개인 블로그에 소속정당 배너 게시

《질 의》

아래의 내용에 대한 선거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원이 자신의 개인 블로그 및 미니홈피 등의 개인 홈페이지 공간에 정당의 ‘당명·로고’만으로 구성된 배너를 제작하여 게시하거나, ‘국민참여당’이라는 당명을 기재하고 거기에 당의 홈페이지를 링크시키는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정당이 당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당명 및 로고로만 구성된 배너를 제작하여 당원이 사용하기 쉽도록 제공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 정당 홈페이지에 배너이미지와 소스를 게시하여 두고, 당원들이 퍼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임.

《의 견》

현재 각 검색포털업체 등은 각 정당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여러 정당의 당명에 각 정당의 홈페이지를 링크시켜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것은 해당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에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카테고리 구성하여 인터넷 사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 : http://dir.naver.com/Society_and_Politics/Politics/Parties)

인터넷 상에서 링크나 배너는 광고나 홍보의 성격 뿐만 아니라 일종의 주소록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단순히 당명과 로고로 구성된 링크와 배너를 광고로 보고 이를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다면, 현재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검색포털사이트와 개인의 편익을 위해 링크 등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가 되므로, 지나친 법 해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9. 11. 26. (가칭)국민참여당창당준비위원회위원장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당원이 자신의 개인 블로그 및 미니홈피 등에 소속 정당의 정당명·로고로 구성된 통상적인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정당이 홈페이지에 배너이미지와 소스를 게시하여 두고 당원들이 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임. (2009. 12.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5 신고가 지연된 인터넷광고 비용의 보전

《질 의》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 2009. 10. 28. 실시한 국회의원재선거에 「공직선거법」 제82조의 7(인터넷광고)에 의하여 인터넷 광고를 제작하여 선거운동에 활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거운동 등에 바빠 신고를 7일 정도 지나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인터넷광고비용을 보전 청구하였을 경우 해당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인터넷광고가 신고는 지연되었으나 잔여 선거운동기간동안은 신고된 상태로 광고가 게시되었습니다. 이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와 보전받을 수 있다면 그 범위에 대하여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광고 게재내역 》

○ 광고 게재일 : 2009. 10. 15 ~ 10. 27. (13일간)

○ 서면 신고일 : 2009. 10. 22. 17:24 (2009. 12. 9. 국회의원 이찬열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7제4항에 따라 신고한 다음날부터의 광고비용은 보전받을 수 있을 것임. (2009. 12.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6 월간잡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터뷰 기사 게재

《질 의》

우리 (사)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월간 「신용경제」는 1983년 창간한 금융경제 전문 잡지입니다. 이에 본지는 ‘파워인터뷰’란을 두어 2009년 한 해 동안 매월 전국을 순회하며 지방자치 발전상황을 알리고자 광역시장 및 도지사들을 인터뷰하였습니다(현재까지 13명의 시·도지사들과 인터뷰하였음).

이러한 본지의 기획과 일정은 2010년에도 계속될 계획입니다(2010년 2·3·4월호 게재 예정임). 다만,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본지의 기획기사가 「공직선거법」(제93조 내지 제97조)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받고자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2. 10. (사)한국산업경제연구원장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정기간행물사업자가 「공직선거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 발전상황에 대한 취재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보도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특정 입후보예정자만 부각시켜 계속적으로 취재·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등 같은 법 제8조·제96조·제97조 또는 제254조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임. (2009. 12.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7 소방방재청의 화재예방 캠페인시 소화기 기증 등

《질 의》

우리청에서는 월동기 화재취약시기를 맞이하여 화재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문화재 화재진압훈련 및 재래시장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재래시장 소방시설 보강을 위한 “소화기 기증”을 하고자 하오니, 아래 질의사항이 선거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 화재진압훈련 및 재래시장 화재예방 캠페인 개요 》

1. 일 시 : 2009. 12. 23.(수) 15:30 ~ 17:30
2. 장 소 : 경남 양산시 통도사(문화재 화재진압훈련)
경남 양산 남부시장(재래시장 화재예방 캠페인)
3. 주최/주관 : 소방방재청 주최 / 경남 소방본부 주관
4. 참여기관 : 18개 기관·단체 460여명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자위소방대원,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5. 참석예정 : 행정안전부장관(소방방재청 주무장관), 등

《 질의사항 》

1. 재래시장 번영회에 소화기(100대 정도) 기증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전달해도 되는지 여부
2. 재래시장 번영회에 소화기(100대 정도) 기증시 이 직접 전달해도 되는지 여부 (2009. 12. 16. 소방방재청장 질의)

《답 변》

소방방재청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문화재 화재진압훈련 및 재래시장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귀문과 같이 재난관리에 필요한 소화기를 기증하는 것은 직무상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 (2009. 12.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8 「공직선거법」 제86조제6항의 공공기관의 범위

《질 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다음 각호의 단체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니 회신 바랍니다.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구·시·군 이상 조직
2.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고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대한노인회 등의 구·시·군 이상 조직
3.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또는 개별법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 (2009. 12. 7. 광진구청장 질의)

《답 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제6항의 공공기관에 해당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사)대한노인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중앙회·연합회 또는 지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경우라면 그 중앙회 등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6항의 공공기관에 해당할 것임.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보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 제86조제6항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2009. 12.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9 정당과 시민단체간 선거공조 등

《질 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시민, 시민단체들과의 선거공조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정당과 단체들이 정당이 아닌 하나의 기구(이하 A기구)를 만들어 공동후보를 내는 것

※ A기구의 핵심활동 : 후보검증, 후보선출, 정책검증, 정책발표, 여론조사, 조직확대, 선출된 후보자의 홍보, 기구의 후원모금, 사무실운영

※ A기구에 제 정당, 시민단체, 일반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위원회”를 두어 이 위원회가 후보자 선출권 및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는 것

2. 일반시민들(제 정당 소속 포함)로 하는 하나의 기구(이하 B기구)를 만들어 공동후보를 내는 것

※ B기구의 핵심활동 : 후보검증, 후보선출, 정책검증, 정책발표, 여론조사, 조직확대, 선출된 후보자의 홍보, 기구의 후원모금, 사무실운영
(2009. 11. 30. 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최성 질의)

《답 변》

귀문과 같이 정당과 시민단체 또는 일반시민들이 공동후보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7조제2항·제89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09. 12.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2.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17
3.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	19
4.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22
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	23
6.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	——	25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28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30
9.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32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0호, 2009.12.09. 공포]

1. 제정이유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업 경영주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직접지불금 지급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9620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774호, 2009. 10. 8. 공포·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절차,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기준, 직접지불금 약정의 체결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제3조)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면 등록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한 후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를 내주도록 함.

나. 등록정보의 변경(제4조)

농어업경영체는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등록정보의 수정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요청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한 후 서면, 전화로 알려주도록 함.

다.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기준(제8조)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려면 만 45세 미만으로 영농·영어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여야 하고, 대학의 농수산 관련 학과 또는 농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어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라. 직접지불금 약정의 체결(제9조)

농업경영체는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하려면 직접지불금 약정신청서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해당 농업경영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인정될 경우 약정을 체결하도록 함.

마.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제11조)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15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농어업인 중에서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물식품부령 제102호, 2009.12.14. 공포]

1. 개정이유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유기축산물의 전환기간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조정하며,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 자격요건을 명확화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보완(제9조제2항 신설)

- 1) 현행 인증기준은 전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위주로 설계되어 품목별로 다양한 인증기준을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 실제 인증품목의 특성 및 재배형태에 맞는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나. 인증심사 일정 통보기간 명확화(제15조제1항)

- 1) 인증신청을 받은 후 인증심사 일정 등에 대한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를 명확화 할 필요가 있음.
-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이나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인증심사일정과 인증심사원 명단을 알리도록 함

다. 유기축산물의 전환기간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조정(별표 3 제3호마목)

- 1) 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일정한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품목의 전환기간이 국제기준보다 길어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 육계, 산란계 및 오리에 대한 전환기간을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메추리에 대한 전환기간을 새로 추가함.

라.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 자격요건 보완(별표 4 나목)

- 1) 현행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 중 인증심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일 것이라는 요건이 불명확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 인증심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일 것이라는 요건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8조제3항, 제11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12.15. 공포]

1. 개정이유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절차 등을 정비하고,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758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영 제13조)

- 1)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매립지등을 임대할 필요가 있음.
- 2) 매립지등의 임대대상 자격자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협동조합으로 함.
- 3) 매립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임대하여 영농 규모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가 기대됨.

나. 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영 제29조 및 제30조)

-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과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정할 필요가 있음.
- 2)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과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하되,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등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함.
- 3) 저수지 상류지역의 일정지역에서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함에 따라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및 설립절차 등(영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마을정비조합의 설립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 인가 신청 시 마을정비조합의 규약 등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조합원의 자격 기준을 마을정비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 하며, 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조합원의 사망 등으로 정함.

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영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평가기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요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관련 전문가, 농어업인 등에게 자문하여 확정하고, 실적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는 농어촌산업 육성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전담부서가 있고,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정함.

- 3) 농어촌산업 정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효율적인 농어촌산업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및 운영(영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마을정비계획 수립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마을정비계획에는 마을공동관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마을정비구역 지정 시 마을정비구역의 명칭·위치와 면적, 사업개요 등을 고시하도록 함.
- 3) 마을정비구역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 징수 절차, 사용 범위 등(영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무단점용료 징수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무단점유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무단점용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내며, 이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징수절차를 정하고, 무단점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에 사용하도록 함.
-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를 징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선량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4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844호, 2009.12.29. 공포]

1. 개정이유

환경오염, 에너지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자전거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이용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전거의 도로통행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 정의함(법 제2조제1호).
-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운영하도록 함(법 제4조의2 신설).
- 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5조제1항).
-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자전거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의2 신설).
- 마.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 등을 규정하던 조향 및 관련 벌칙조항을 「도로교통법」에 규정함에 따라 이 법에서 삭제하도록 함(현행 제15조·제17조·제18조 및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삭제).
- 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함(법 제21조).
- 사. 자전거의 도난방지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된 자전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관리하도록 함(법 제22조제2항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845호, 2009.12.29. 공포]

1. 개정이유

자전거의 통행방법 등에 관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이 법에 옮겨 규정함으로써, 도로교통에 관한 법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전거의 통행권 확보를 위하여 실제 도로상황과 관계없이 차종별 속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정된 차마 간의 통행우선순위를 폐지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의 운전자로 하여금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에 주의하도록 하며, 자전거의 운행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경우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전거횡단도”를 교통안전표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규정함과 아울러, “자전거”의 정의를 자전거 등록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이 법에서 준용하도록 함(법 제2조제8호의2 및 제18호의2 신설).
- 나.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모를 착용시켜야 하는 장소를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때에도 안전모를 착용시키도록 함(법 제11조제3항, 법 제50조제4항 신설).
- 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전거의 통행방법, 자

- 동차등의 자전거도로 통행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수정·보완함(법 제13조제6항, 법 제13조의2 및 제19조제2항 신설 등).
- 라.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되,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을 서행하도록 하는 등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게 함(법 제13조의2제4항 신설).
- 마.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된 곳에서는 이를 이용하도록 하고,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 자전거를 보호하도록 함(법 제15조의2 신설).
- 바. 차마의 최고속도에 따라 차마 서로간의 통행 우선순위를 정해 후순위 차량에게 일률적으로 진로양보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차의 운전자가 운전상황에 따라 뒤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도록 함(현행 제16조 삭제, 법 제20조 및 제26조제3항).
- 사. 속도가 느린 자전거가 정지한 앞차의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위협할 수 있으므로 오른쪽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앞차에서 승·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도록 함(법 제21조제2항 신설).
- 아.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중앙선 부근으로 이동하여 좌회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교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좌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거나 진행하는 자전거 또는 보행자 등에 유의하도록 함(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신설).
- 자. 자전거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도록 하고, 이 경우 보행자로서 보호받도록 함(법 제13조의2제6항 신설, 법 제27조제1항).
- 차.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않아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의 운전을 금지함(법 제50조제7항 신설).
- 카.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

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의 운전을 금지함(법 제50조제8항 신설).

타.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할 때 일시정지 하지 않은 차마의 운전 자 등을 범칙행위로 처벌하도록 함(법 제156조제1호).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6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9847호, 2009.12.29. 공포]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법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정비하며, 최근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 대상 질환에 신종 감염병 등이 포함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을 미리 비축하거나 구매를 위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통합 및 기생충질환의 감염병으로의 통합(법 제명 및 제2조제6호)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생충질환을 규율하던 「기생충질환 예방법」을 종전의 「전염병예방법」과 통합하여 법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기생충질환 예방법」의 기생충질환을 감염병으로 통합하여 제5군감염병으로 함.

나.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 변경(법 제2조)

- 1)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이 있음에도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는 질환만을 의미하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질병 관리에 있어 문제가 있음.
- 2) 종전의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변경함.

다.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의 신설(법 제2조제8호)

- 1) 최근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 대상 질환에 신종감염병 등이 포함되어 국내에서도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2)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으로 함.
- 3) 이와 같이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신종감염병 등이 국내로 유입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법 제9조 및 제10조)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사전 비축과 생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2)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감염병 업무 담당 공무원, 감염병 전공 의료인, 감염병 관련 전문지식 소유자,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마. 고위험병원체의 안전 관리 강화(법 제22조 및 제23조)

- 1)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로 외부에 유출될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고위험병원체를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2)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반입 허가를 받은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면 그 인수 장소를 지정하고 이동계획을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3)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그 안전관리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4) 이와 같이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생물테러 등 대규모 인명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을 막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바.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법 제40조)

- 1) 생물테러감염병 등은 전파 속도가 빠르므로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 유행과 동시에 예방·치료 의약품을 바로 투입하여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음.
-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고, 예방·치료 의약품을 정하여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3) 이와 같이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확대(법 제42조)

- 1) 종전에는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제1군전염병등을 강제 치료·입원 등 강제처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전파 속도가 빠른 결핵,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감염병 등이 제외되어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감염병을 강제처분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2) 종전에 강제처분 대상이던 제1군감염병을 포함하여 제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홍역·폴리오, 제3군감염병 중 성홍열·수막구균성수막염·결핵, 제4군감염병 중 일부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을 강제처분 대상에 포함함.
- 3) 이에 따라 전파 속도가 빠른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860호, 2009.12.29. 공포]

1. 개정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는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등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공공시설이며,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나, 도시공원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장기간 동안

미조성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도시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체계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공원조성체계를 탄력적으로 개선하고, 민간자본의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간 미조성된 공원을 조속히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도시공원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조성·확충하여 민원해소 및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산림법」의 명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법 제2조제2호).
- 나.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토지에 대해서도 도시공원내 토지와 같이 세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공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법 제2조제3호).
- 다. 도시공원의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를 도시공원으로 복구하거나 10만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을 신설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법 제5조제3항 신설).
- 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수립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한을 폐지함(법 제9조).
- 마. 공원시설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및 주민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 함(법 제16조의2 신설).
- 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 또는 개선하거나 기존 공원시설부지안에 서 공원시설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이라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9조제5항 신설)
- 사.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70퍼센트 이상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부지의 일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의 설치를 허용함(법 제21조의2 신설).
- 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아

니한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때에 도시공원의 필요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도시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속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법 제48조의2 신설).

자. 기존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년 1월 1일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자동변경되도록 한 사항을 도시공원결정의 실효제 등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필요 조치를 하도록 그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기존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재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제4항 및 제16조의2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861호, 2009.12.29. 공포]

1. 개정이유

도시가 산업화됨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전기선, 통신선 등이 증가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대형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도 및 가스 등의 지하매설물 또한 도로에 매설되고 있어 이들을 설치 및 관리하는 데에 도로의 반복굴착으로 인한 도로구조의 훼손, 공사시의 환경·안전문제, 교통사고의 위험 등의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지역 등에 공동구 설치를 의무

화하고, 공동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대도시 시장에 대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으로 확대 조정함으로써 도시계획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계획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대도시 시장에 대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으로 정한 현행 규정을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으로 변경함(법 제29조제1항).
- 나.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함(법 제44조제1항).
- 다. 도로관리청은 지하매설물의 빈번한 설치 등으로 인하여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존도로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되, 이 경우 재정여건 및 설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공동구가 설치되도록 함(법 제44조제2항).
- 라.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공동부담하도록 하되,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시설의 개별적 매설비용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법 제44조제5항 및 제6항).
- 마. 공동구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하되, 해당 공동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구관리자는 매 5년마다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바. 공동구 설치·관리의 주요사항 심의를 위해 설치된 공동구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공동구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함(법 제44조의2제4항 신설).

사.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에 따라 산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44조의3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887호, 2009.12.30. 공포]

1. 개정이유

현행 제도는 재래시장과 상점가 중심으로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어 시장이나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의 상권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부지원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존재하는 상업지역으로서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함(법 제명, 제1조 및 제2조).
- 나. '상권활성화구역'이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되고 해당 구역 안에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한 상업지역으로서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함(법 제2조제4호).
- 다.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료 등이 감면되는 국·공유지에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을 포함시킴(법 제18조제1항).
-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법 제19조의2 신설).
- 마.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법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 신설).
- 바. 시·도지사는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업 시행에 대한 시정명령이 시정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법 제19조의6 신설).
-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법 제19조의8 신설).
- 아.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권활성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지

원하기 위하여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시장경영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영역을 확대함(법 제68조 및 부칙 제3항).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 37
2.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 42
3.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47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의안 번호	598
----------	-----

발의연월일 : 2009. 11.

발 의 자 : 오영세의원외 인

1.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점포의 입점확대로 인해 지역의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권이 잠식되고, 그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유도하여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소상공인을 보호·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3조)
- 나. 상생협력을 위한 필요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함(안 제4조)
- 다. 시장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항들을 마련토록 함(안 제5조)
- 라. 시장이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협력사항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마. 시장이 상생협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유통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
4.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협력 우수기업 발굴·육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 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지역 생산품 및 농수축산물의 구매 및 판로개척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상생협력 촉진과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유통업과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 국장
 3. 대형유통기업 대표
 4. 중소유통기업 대표
 5. 소상공인 대표
 6. 전통시장 대표
 7. 소비자 및 시민단체 대표
 8. 그 밖에 유통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업무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 지원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⑧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진 유통기법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시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 및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3. 지역 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역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용역과 공사발주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7.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제7조(상생협력 촉진 지원) 시장은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생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대규모점포의 종류 등 <개정 2009.10.1>) ①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라 함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2조제3호다목의 매장면적 산정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한다. <신설 2009.10.1> [전문개정 2006.6.22]

제5조의2 (대형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①법 제3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형유통기업(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 및 백화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중소유통기업 또는 납품업자간의 상호발전에 관한 유통산업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6.22]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3>

1.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6.3.23>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2. 제1호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기준과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그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9.10>

③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9.27]

2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928
----------	-----

제출연월일 : 2009년 12월 일

제 출 자 : 경기도지사

1. 제정이유

감사행정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도 본청 및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31개 시·군에 대한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고, 감사운영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기 능(안 제2조)

- 1)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감사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 2)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 3) 청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 4) 부조리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5) 명예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 6) 기타 경기도지사가 감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나. 구 성 : 13명(안 제3조)

- 1) 법조인·공인회계사·기술사·감사전문가·언론인·교수 등 관련분야의 전문적 학식 및 사회적 덕망을 겸비한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 5명
- 2) 도의회 의원 : 2명
- 3) 도소속 공무원 : 6명

다. 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명직 위원(도소속 공무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함(안 제4조)

라.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6조)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고 감사행정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며 감사운영에 관한 경기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두는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감사활동을 지원한다.

1.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감사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청렴시책 추진에 관한사항
4. 부조리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명예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감사와 관련하여 지문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원 중 7명은 법조인·공인회계사·기술사·감사전문가·언론인·교수 및 경기도의회 의원 등 관련분야의 전문적 학식 및 사회적 덕망을 겸비한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2. 임명직 위원 6명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하 "도소속 공무원"이라 한다) 중 자치행정국, 도시주택실, 소방재난본부, 복지여성정책실, 기획행정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감사관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도지사가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
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계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
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주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심의결과는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하면 간사
에게 자료의 제출요구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일비 지급) 도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감사 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의 최초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소관실·과		감사담당관
입 안 자	실·과장직위 성명	감사담당관 김영식
	담당직위 성명	감사총괄담당 김원섭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 우종민(249-2971)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3]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09년 11월 4일

발 의 자 : 김대호의원 외 17인

1. 제정이유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상북도 차원에서 시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사업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다. 여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성별·연령·국적·혼인상태·취업상태, 여성폭력 발생요인, 발생유형, 폭력유형 등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매 3년마다 실시함(안 제7조)
- 라.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안 제8조)
- 마.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함(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
- 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폭력예방 및 보호관련 정보 제공과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4조, 안 제15조)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경상북도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 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초한 차별의 한 형태로써 여성의 인권과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2.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
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긴급보호 등 서비스 제공 사업
4. 아동·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아동·여성 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폭력 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별·연령·국적·혼인상태·취업상태 등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폭력 발생요인, 발생 및 폭력유형,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관계기관간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연대의 설치) 도지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0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지역내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11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경북지방경찰청, 법원, 검찰청, 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의 아동·여성 업무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으로 한다.
 1.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 근무기간 중으로 한다.
- ⑥ 위원장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하되, 지역연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 중 1인을 선출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 ⑦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여성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 13조(회의) ① 지역연대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지역연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역연대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 14조(관련정보의 제공) 도지사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업무 관련자 및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6조(실비보상) 도지사는 아동·여성 보호시책의 수립·추진과 지역연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경상북도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과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 (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2.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각종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의회 <http://council.gb.go.kr>]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1. 저탄소 거울지킴이“내복입기”캠페인 전개	——	56
2. 자전거이용시설 및 통행여건 획기적 개선	——	57
3. 아름다운 간판이 국가의 품격을 높입니다	——	58
4. 지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 권한강화 추진	——	60
5. 승강기 내 휴대폰 통화불통 끝!	——	63
6. 서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	64
7. 보행환경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	65
8. 국민들의 작은 지혜가 세상을 바꿉니다	——	67
9.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수립기능”등 98개 중앙권한 지방이양 확정	——	71
10. ‘09 희망근로 프로젝트, 경제위기극복의 디딤돌 역할	——	73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1 저탄소 겨울지킴이 “내복입기” 캠페인 전개

- 에너지낭비 막고 실내난방비를 줄이기 위한 내복입기행사 열려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입주부처 공무원과 청사 방문객을 대상으로 건강한 겨울나기와 온실가스 (CO₂) 감축을 위한 「겨울철 내복입기 캠페인」을 12월 3일(목)과 12월 4일(금) 이틀간 정부중앙청사 본관 로비에서 실시한다.
- 이번 캠페인은 에너지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겨울철을 맞아 내복을 입으면 온도 3℃가 올라가는 체감효과로 에너지를 아낄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여, 입주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생활 속 작은 실천인 에너지절약 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그간 행정안전부는 청사관리를 에너지절약형시스템으로 전환, 개조하기 위하여 ▲ 고효율 LED조명 교체 ▲ 태양열온수 및 지열히트펌프시스템 도입 ▲ 사무실 온도를 겨울철은 1℃ 하향조정 하고 여름철은 1℃상향조정(권장온도 : 동절기 20℃이하, 하절기 26℃이상) ▲ 사무실 조명 일괄 점·소등제어 ▲ 승강기 운행은 5층이상만 하되 격층 운행방안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 이러한 에너지절약시책의 실천으로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는 5개 청사에서 10월말 현재 올해 에너지절감목표 (3%절감)대비 7.8% (금액으로 약 8억원)를 절약하는 성과를 올렸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국가적과제인 에너지절약과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10년부터 연도별 감축목표와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에너지절약이 생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 자전거이용시설 및 통행여건 획기적 개선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및 통행여건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이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계획 등 각종 도시계획에는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 증가하는 자전거주차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자전거주차시설을 의무화하고 있는 공영노외주차장 외에 노상 및 부설주차장도 일정비율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또한 자전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중학교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이와 함께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도로 개설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한 자전거도로 확보를 위해 자전거전용차로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 자전거의 도난방지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군·구별로 등록된 자전거를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통합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자전거등록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 한편, 「도로교통법」도 동시에 개정하여 자전거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도로상 통행우선순위(긴급자동차,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를 폐지하고, 어린이 자전거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기 등을 규정하였으며
 - 도로통행방법 통일을 위해 자전거 도로통행방법 및 벌칙관련 규정을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도로교통법」으로 이관토록 하였다.
- 이번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 정부 자전거정책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정오 행정안전부 지역발전

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이용시설이 대폭 확충되고 자전거
통행여건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됨으로써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
용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 마련 등 후속법령 개정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 아름다운 간판이 국가의 품격을 높입니다

- 행안부, 「간판문화 선진화 방안」 보고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09.12.11(금)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국
가브랜드위원회 제 3차 보고회의'에서 「간판문화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였다.
 - 그동안 우리의 간판은 소규모 점포의 증가, 남보다 크고 요란한 간판
을 선호하는 의식, 도시경관으로서의 공공재보다 개인소유물로 인식하
는 이유 등으로 난립되어 왔다.
 - ※ '09.11월 조사결과 간판은 총 555만개로 '99년 대비 98% 증가하였고
이중 56%가 불법광고물로 잠정 집계됨
 -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름다운 간판문화를 새롭게 정착시킴으로써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나아가 국격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
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과 함께 「간판문화 선진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 신문·방송 등과 MOU를 체결하여 우리의 간판문화 선진화에 대한 국
민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아름다운 간판문화」 운동이 확산될 수 있
도록 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업종별·지역별 「아름다운 간판모델」을 개발·제공하고, 문
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반 국민들의 간판에 대한 인식이 제
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광고물 관리에 관한 시도의 조정기능 강화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을 개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부여

된 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 및 정비·단속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함께 부여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기능 부여, 표준가이드라인 설정 및 교차단속도 실시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광고물 제작업체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 광고업 등록기준이 강화되고 디자인 능력향상 등을 위한 교육이 확대 실시된다. 또한, 제작업자 실명제 표시 및 불법 제작업자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될 계획이다.
- 아울러,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광고물 관련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 이들에 대한 교육은 지방행정연수원, 옥외광고센터, 시도 교육원, 옥외광고협회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된다.

□ 불법광고물 정비·개선 지속적으로 추진

- 도로변에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안전 등 도로교통을 저해하는 현수막·입간판·벽보·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3월, 10월 2회에 걸쳐 일제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 다만, 어려운 서민생활을 고려하여 생계형 불법 간판들에 대해서는 주민을 설득하여 스스로 정비·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G-20 등 국제행사 개최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도시에 「매력있는 거리」 조성이 추진된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간판문화 선진화」 기본계획을 '10년 1월까지 수립하고, 이와 함께 '10년 1월부터 「간판문화운동」과 「매력있는 거리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10년 5월까지 관련 법령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광고공해로부터 벗어나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가꾸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고, 2010년은 그 시점이 되는 해”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옥외광고물 정책을 지역의 공공디자인적 관점에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4 지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 권한강화 추진

- 출범 1주년, 지방분권추진위원회 -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일괄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추진위원회(위원장 이숙자)」가 출범('08.12.2)한지 1년을 맞이하였다.
- 지난 1년 동안 지방분권 심의시스템 구축 및 이양과정에서의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의 다양한 시각 등을 반영하면서 분야별 분권과제들을 적극 추진하였다.
- 그 결과 1년 만에 지난 5년간 지방에 이양된 중앙행정권한 사무 902건의 77.3%에 해당하는 697건을 이양하는 등 지방분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

※ 연도별 지방이양 실적(확정 사무수)

구 분	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이양확정	2,265건	185	176	251	478	53	203	80	88	54	697

- 특히, 지방분권 20개 과제 가운데 위원회에서 선도적 실행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인 중앙권한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재정 확충분야 등의 과제는 소관 추진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가시적인 추진성과를 거두었다.
-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은 “실무위원회와 본위원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되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시행”으로 지난 10년간 이양건수(2,265건) 가운데 연간 최대치인 697건을 이양확정하였으며,
- 중앙부처의 이양사무 점검·평가를 통한 법령개정 권고와 자치단체의 이양 우수 정착사례 및 개선 사례 등에 대한 종합적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양의 실효성 확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 부처별 지방이양 실적(확정 사무수)

부처	계	국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부	지식경제부	산림청	문체부	교과부	행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방통위	기타
건수	2,265	469	394	213	197	174	169	114	107	81	78	58	211

-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공적인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을 위해서 선 사무이양을 지양하고 인력과 예산을 병행하여 지원해주기를 요청하면서, 지방분권의 지속적 추진은 “전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당위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양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고 있는 업무를 예로 들면
- ①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등 기능(환경부)의 25개사무 이양”**의 경우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의 관리 업무체계(수집·운반·처리 등)가 동일함에도 그 권한이 구분처리되던 것을 시도지사로 일괄이양하여 폐기물처리·관리 및 지도·감독의 일원화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 ②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기능(행정안전부)의 9개사무 이양”**의 경우 현지성이 강한 사무로 중앙부처보다는 현장감독이 신속한 시·군·구에서 처리하게 함으로써
 - ⇒ **효과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뿐만아니라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한 놀이공간 확보로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음
 - ③ **“화장품 제조업 신고등 기능(식품의약품안전청)의 11개 사무 이양”**의 경우 현지성이 강한 사무로서 화장품 제조에서 유통과정까지 시도 특성에 맞는 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지역업체의 수요에 맞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을 제고** 했을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기능 중복수행으로 인한 비효율적 업무행태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었음
 - ④ **“개발제한구역내의 집단취락,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실효고시 기능(국토해양부)의 1개 사무 이양”**의 경

우 중앙부처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민원해결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어 주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던 것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 개발제한구역내의 2,000여개에 달하는 집단취락과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단절토지에 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주민의 생활불편을 조기해소하고 신속한 재산권 행사를 원하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 한편, 특별지방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이양도 눈여겨 볼만하다. 국도 하천·해양항만·식의약품 3개 분야 11개 법률 중 9개 법률(2개 법률은 개정추진 중)은 이미 개정을 완료하여 국도의 공사, 점용·사용 인·허가, 개항단속, 식의약 관련 업소 지도·점검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위임업무를 축소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업무 이양을 확대하였고,

○ ‘10년도에는 2단계 분야인 노동·보훈·산림·중기·환경에 대해서도 지방분권추진위원회에서는 계속 정비방안을 강구·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이 절실하여 지방재정발전소위원회를 위원회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분권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추진방안들을 검토하였다.

○ 이미 정부에서는 ‘10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규모확대 등을 포함한 지방재정 확충 제고방안 등을 마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지방분권추진위원회(위원장 : 이숙자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1년동안의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창의성과 다양성을 활용하여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지자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조정하는 한편,

○ 주민의 편익 증진과 자치역량 강화, 행정의 효율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지방이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5 승강기 내 휴대폰 통화불통 끝!

- 행안부, 승강기내 이동통신 중계기(안테나) 설치관련 검사기준 마련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승강기의 전자파 오동작 예방 및 승강기 내 휴대폰 통화불량으로 인한 민원해소 등을 위하여 전자파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등 안전성이 확인된 승강기의 경우 이동통신 중계기(안테나) 설치가 가능토록 검사기준을 마련 시행 한다고 밝혔다.
- 검사기준 내용은 승강기 내 이동통신 중계기의 설치는 전자파 인증(KS B 6945)을 받은 승강기로 한정하고 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경우도 승강기의 전자파 내성기준(전자파에 견디는 정도)을 초과하지 않도록 중계기의 최대·최소 출력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 또한, 승강로(승강기 이동통로) 내 이동케이블(승강기 이동에 따라 움직이는 케이블)간 엉킴으로 인한 오동작 예방을 위해 신호전송을 위한 케이블은 구부림 등 케이블 적합성 시험기준(KS B 6948) 등 관련 기준을 준수토록 규정
- * 승강기 및 통신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구성 및 승강기의 전자파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전자파 적합성 시험 등을 통하여 기준 마련
- 행정안전부는 금번 검사기준 마련으로 전자파로 인한 승강기 오동작 사고예방 및 승강기 내 통화불량으로 인한 연간 약 1만4천 건의 대국민 민원해소를 기대하며,
-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통화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그간 건물의 층마다 중계기 안테나를 설치하는 등으로 발생한 중복투자 비용이 향후 5년 이내 약 5,6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금번에 마련된 기준이 승강기 내 갇힘 등 고장발생 시 승강기 안전관리 업체 및 119 구조대 등에 구조요청 신호의 무선전송 등 유비쿼터스가 접목된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6 서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 '09년 성과기반, 건설 집행을 위한 개선대책 마련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서민 체감경기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 강화 차원에서 내년에도 상반기 60%를 목표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내경제가 회복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용부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미흡하고, 지역 서민들이 경기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 따라서, '09년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각종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 특히, 지방재정이 서민생활, 중소기업 등 지역 현장경제와 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자리·서민지원 사업 등이 적기에 차질 없이 집행되어 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경기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적극적인 조기집행이 필요하다 하겠다.
- 내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방안은 지난 12.18(금) 시·도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09년도 조기집행을 담당할 지방 공무원들의 경험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 이를 통해, 사전에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함께 마련하였다.
- 내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방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각종 사회보장적 수혜금, 의회비,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등 조기집행의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매월 균분집행이 필요한 경비는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 둘째, 민간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일자리·서민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중점 관리토록 하였다.

- 셋째, 조기집행 과정에서 예산의 중복투자 등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낭비 대응 전담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을 활성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실한 집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였다.
- 넷째, 금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면서 시행한 계약절차 단축·간소화 등 각종 집행촉진을 위한 한시적 조치사항은 실효성이 높은 과제들을 중심으로 당분간 연장하도록 하였다.
- 한편, 자치단체가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적극적인 조기집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 첫째,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차입을 하는 경우 이자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 일시차입금 이차보전 대책을 시행하고, 그 지원규모를 금년도 1% 수준에서 2% 수준으로 확대한다.
- 둘째, 조기집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 지원하되, 지방의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집행 실적평가를 금년도 3회에서 2회로 줄이고, 과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지표도 개선하고자 한다.
- 아울러, 지방에서 자금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원이 최대한 조속히 교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7 보행환경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 국민 80% 이상이 보행자 권리를 우선하는 법률 필요 인식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보행환경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보행환경에 관한 의식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 만 19세 이상의 일반인 1,501명(표본오차 ± 2.5)을 대상으로 1:1 개별면접을 통해 실시하였다.

- 조사결과 우리나라 일반인은 하루에 1~2시간 정도 보행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평균적으로는 78.6분동안 실외 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변 보행환경의 안전수준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응답과 보통, 그리고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대체로 골고루 나타났으며,
 - 보행자 사고에 위험이 되는 요인으로서는 ‘과속 주행하는 자동차’, ‘보행자의 신호등 미준수’ 등을 우선 인식하는 등 보행사고의 원인을 보행환경보다는 법규를 준수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보행환경에 대한 관심 및 의식수준은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그러나 ‘협소한 보도 폭’, ‘공사로 인한 보행로 폐쇄’, ‘보도 위 장애물’ 등으로 보행에 불편을 겪어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85%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실제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보도·신호등·횡단보도 등 안전시설 설치 확대’를 꼽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보행자를 우선하는 정책’ ‘운전자들의 보행자 우선 운전의식’ 등을 언급하고 있다.
- 특히, 보행자 권리를 우선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5명 중 4명 이상(80.3%)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보행자 권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행정책에 대한 홍보와 선진보행문화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들의 보행환경에 대한 의식수준을 높이고, 보행안전 시설 개선 및 법령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 행정안전부 박일범 안전개선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 우리나라는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 평균의 2배를 넘는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행자 안전에 대한 논의가 활

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탓에 보행환경에 대해 일반적인 관심도는 낮은 편이나,

- 보행자를 위한 시설 개선 및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어 보행안전 관련 법령제정 등 제도정비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 국민들의 작은 지혜가 세상을 바꿉니다

- 국민아이디어 공모(4.1~11.15)결과 17,123건 접수, 우수제안 82건 선정-

【대통령상 수상 아이디어】

- ◆ “유치원, 어린이집에 「통합 야간반」을 운영해 주세요”
- ◆ “다자녀가구 전기요금을 사용량 제한없이 할인해 주세요”
- ◆ “장애 판정이전 복지용구 구입비를 소급해서 돌려 주세요”
- ◆ “일용 근로자도 소득증명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 ◆ “경찰서 방문없이 교통범칙금을 납부하게 해 주세요”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둔다”는 대통령의 국정지침에 따라, 오늘(12.29)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활공감 정책 우수제안자 및 우수활동 주부모니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주재로 「생활공감 - 국민행복 실천대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대회에서는 국민이 만든 생활공감정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들어 새로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들에 대한 시상과 함께 향후 발전방향이 제시되었으며,
- 내년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확대 운영을 위해 전용 홈페이지 구축과 지원센터 설치, 중앙과 지방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 사전 준비상황과 개선방안이 모색되었다.

- 오늘 시상에서는 우수아이디어 제안자 등에게 **대통령상(10명)**, **국무총리상(10명)**, **행정안전부장관상(180명)**이 수여되었다.
- 이날 하반기 우수 아이디어로 채택된 82건 중에서 **대통령상**으로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다음의 **5개 아이디어** 제안자가 받았다.

① 유치원, 어린이집에 통합 야간반을 운영해 주세요.(교과부)

- (추진배경) 맞벌이 직장여성들의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통합 야간보육원(어린이집과 유치원 연계) 운영
- (추진계획 및 실적)
 - 맞벌이 부부 육아지원 및 출산장려 차원에서 전국 150개 공·사립 유치원에 「야간돌봄 전담유치원」 시범운영(10. 3월)

② 다자녀가구 전기요금을 사용량 제한없이 할인해 주세요. (지경부)

- (추진배경)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월 사용량 300Kwh 이상일 경우에만 할인(20%)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전기요금 할인
- (추진계획 및 실적)
 - 가계 경제적 부담 완화, 출산장려, '09.8월부터 제안이 정책화돼 시행중 (연간 63만 가구, 약353억원 경감)

③ 장애 판정이전 복지용구 구입비를 소급해서 돌려 주세요.(복지부)

- (추진배경) 발병후 6개월 이후 장애인 판정에 따라 보조기구 구입비용 감면혜택(80%)을 받지 못해 판정을 받은 후에라도 소급하여 환급필요
- (추진계획 및 실적)
 - 장애인 부담 경감, 관련 시행규칙 개정과 부처협의 후 '10.4월 실시, 연간 13만 여명의 신규 장애인등록자 혜택

④ 일용근로자도 소득증명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국세청)

- (추진배경) 실제 소득이 있음에도 공공기관 등에서 소득증명을 받지 못해 대출신청이나 보상금 산정 등에서 불이익 초래
- (추진계획 및 실적)
 - 일용근로자 소득금액 증명 전산발급 시스템 구축, '10. 7월부터 시행예정 ('08년 기준 738만명 발급 대상)

⑤ 경찰서 방문없이 교통범칙금을 납부하게 해 주세요. (경찰청)

- (추진배경) '교통위반 사실통지서'를 받게 되면 경찰서 방문없이 인터넷 접속 후 의견진술로 범칙금 납부가능 등 민원인 불편해소
- (추진계획 및 실적)
 - 경찰서 방문에 따른 부담감 해소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조회 및 즉시 납부 서비스('10.6월 시행) ※ 연간 1,040여만건 납부대상자 혜택

□ 한편, 국무총리상은 다음과 같은 5개 아이디어 제안자가 받았다.

① 심폐소생술 동영상, 휴대전화 기본메뉴로 만듭시다.(방재청)

- (추진배경) 심장마비 등 위급시 심폐소생술 동영상을 휴대전화에 기본 메뉴화하여 언제 어디서든 빠른 응급조치 필요
- (추진계획 및 실적)
 - '모바일 응급처치 동영상' 제작 완료('09.10월) 및 MOU체결('09.12월), 휴대전화 탑재 서비스 제공('10~'11년)으로 5천여만대 보급 예정

② 이사갈 때 도시가스 연결비용만 받읍시다.(지경부)

- (추진배경) 이사갈 때 도시가스시설 철거시 드는 비용(3만원 정도)과 이사 가서 또다시 연결을 위해 설치하는 비용의 이중부담 해소
- (추진계획 및 실적)
 - 전입시 연결비용은 계좌이체 등 후불납부, 전출시 철거비용은 징수하지 않되, 비용 일부는 시도 도시가스공급비용에 반영('10년 기준 총 417만 가구, 250억원 절감 효과)

③ 국가유공자 주택임차대부 재지원기간을 현실에 맞게 2년으로.(보훈처)

- (추진배경) 국가유공자 주택임차대부 재지원은 3년이 경과한 후 가능하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시 실효성 미흡 등 개선
- (추진계획 및 실적)
 - 국가유공자 등 무주택자(92,020명)의 주거안정에 기여, 국가유공자 등 대부지원 지침 개정, 2년으로 조정('10년)

④ 대출금리 변동시 SMS 문자로 알려주세요.(금융위)

- (추진배경) 대출이후 추가적인 금리변동(인상·인하) 발생시, 금융기관에서 이자금액을 SMS 문자 등으로 통보하여 연체이자 등 부담 해소
- (추진계획 및 실적)
 - 대출자 알권리 보장, 불공정 금리인상 예방('09.12월 시스템 구축)

⑤ 경운기 전복시 엔진 자동차단으로 2차 사고예방.(농진청)

- (추진배경) 경운기 전복시 엔진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됨으로 2차 사고 및 피해 심화에 따라 연료차단장치(밸브) 기능 설치로 안전성 확보
- (추진계획 및 실적)
 - 경운기 전도사고 시 2차 부상 예방으로 농민 안전보호, 장치 개발 후 '11년부터 기존 80만대 경운기에 설치

- ☐ 이번 수상에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의 정책제안 분야에서 **활약상이 매우 돋보였으며**(대통령상 3명, 총리상 2명, 장관상 20명), 청년층에서 노약자, 다문화 가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나온 **82건의 생생한 아이디어가 새로운 정책으로 탄생**되었다
- ☐ 오늘 수상하게 된 **82건의 제안**은 소관부처에서 구체적 시행시기와 방법 등을 검토하여 **내년부터 「생활공감정책」**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 정부에서는 내년도에도 국민의 지혜를 모아 **생활속의 불편사항을 지**

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을 대폭 늘려 전국 각 지역에서 골고루 활동하게 할 계획이며
- 생활공감사이트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life.go.kr) 등을 통해 국민 아이디어를 상시 모집하고, 계절 및 테마별로 특별공모를 실시하는 등 생활공감정책을 대대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9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수립기능”등 98개 중앙권한 지방이양 확정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1년내 이양토록 9개 부·처·청에 통보 -

-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숙자 성신여대 교수)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수립기능” 등 9개 부처 98개 사무(37개 기능)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확정되어 지방에 이양되는 중앙행정권한은

① 지방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 일치를 위한 사무의 지방이양

- 국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작성 및 협의”, “수용할 토지·건물등 조서의 공고 및 열람조치” “학교폭력 예방기능” 등 9개 사무(교육과학기술부)를 그 권한행사에 따른 책임 일치를 위해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토록 하였고
- “방제명령 이행 감독과 과태료 과징권”,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의 선정에 관한 기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능” 등 6개 사무(농림수산식품부)를 지방에 이양토록 하였다.

② 현지성이 강한 집행사무의 이양으로 자치권 강화

- 현지성 집행사무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등기능 및 환경컨설팅 회사의 등록등 기능”, “순환골재의 품질인증등 기능”, “저공해자동차의 운행등 기능” 등 32개사무(환경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하였다.

③ 신속한 행정처분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무의 지방이양

- 신속한 민원행정을 위해 “고령자 인재은행 지정기능 및 공인노무사 자격등록 등 기능”, “지정직업훈련 시설의 지정 등 기능”, “직업능력 개발훈련 법인설립등 기능” 등 12개사무(노동부)를 시도로 이양하도록 하였고,
-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안전진단전문관리기능” 등 6개사무(국토해양부)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능” 1개 사무(문화체육관광부)를 지방에 이양하도록 하였다.

④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림행정을 위한 사무의 지방이양

- 관리주체가 각각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특성별 수행이 가능하도록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 등 기능 및 유�휴토지 산림전환 기능”,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등 기능”,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등 기능” 등 10개사무(산림청)를 지방에 이양하도록 하였다.

⑤시도별 맞춤형 기업지원행정 및 단순 집행사무의 지방이양

- 시도내 중소기업과 학교를 연계한 맞춤형 교육 및 시도별 특성에 맞는 창업환경 조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인력유입을 위한 환경 조성기능”, “벤처기업활동 촉진기능”,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환경 조성기능” 등 18개사무(중소기업청)를 지방에 이양하도록 하였고,
-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의 증가 및 품목의 다양화 등에 따른 단속의 적시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기능” 4개사무(특허청)를 지방에 이양하도록 하였다.

□ 이번에는, 각 부처에 통보된 **98개 이양확정사무**는 각 부처에서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출범('08.12.2)한지 1년 만에 지난 5년간 902건의 77.2%에 해당하는 **697건을 이양 확정**하는 등 지방분권 가속화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연도별 “중앙권한 지방이양” 확정 현황 〉

연도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총 2,265건	185	176	251	478	53	203	80	88	54	697

- 한편, 이숙자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 지방자치단체가 창의성과 다양성을 갖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지자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조정해 나가는 한편,
 - 주민의 편익 증진과 자치역량 강화, 행정의 효율성을 한 단계 향상시켜 지방이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며 지방분권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10 09 희망근로 프로젝트, 경제위기극복의 디딤돌 역할

-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천안시, 진도군, 해운대구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 시상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결산하는 보고회를 12월 29일 수상 지자체장 및 관계공무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고 우수자치단체를 시상하였다.
- 이 자리에서 강병규 행안부 제 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기관리 정책으로 대·내외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 시행과정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간 힘써 노력한 자치단체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10년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추진한 「'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 * 사업예산 17,070억원, 1日 250,000명, 전국146개 사업(30,000여개 사업장)
- 취약계층 25만개 일자리 제공과 상품권 유통(총 3,840억원)으로
-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도모는 물론 전통시장, 영세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위기 극복의 디딤돌 역할을 하며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보면

- ① 희망근로가 시작된 '09년 6월 이후 취업자수는 증가세를 유지하여 고용증대에 크게 기여하였고
- ② 특히 희망근로 상품권은 당초 가맹점부족, 현금화불편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 11.30 현재 93%이상(2,900억원)이 전통시장에 유통, 회수되어
 -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진출로 인해 위축되고 있는 영세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 ③ 또한 다양한 사업을 지자체별로 시행하여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주민수요를 충족시켰고, 특히 생활밀착형 친서민사업을 시행하여 소외계층의 생활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 자치단체 종합평가 결과

- * 단체장 추진의지, 사업추진체계, 생산적 사업추진실적, 상품권 유통 활성화 노력, 사업집행 실적, 참여자 관리, 지역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광역시·도는 대구광역시, 경상남도가
- 기초자치단체는 충남 천안시, 전남 진도군, 부산 해운대구가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 한편, 이날 최우수단체로 선정된 경상남도는

- 早起鳥捕蟲(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먹는다) 전략으로 사업 초기부터 박차를 가하여 추진한 사례(희망근로 조기추진체계 구축, 사업발굴단 운영, 고객맞춤형 일자리 제공, 도민공감 사업추진 등)를 「**작은 행복으로 다가간 경남 희망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여 참가자의 큰 호응을 받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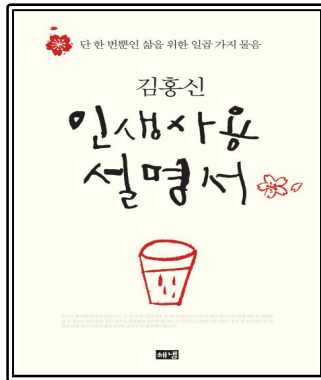
□ **오동호 지역발전정책국장은**

- “금년 희망근로는 저소득층 복지대책차원에서 추진하였다면 내년에는 경제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나, 고용의 경기후행적 특성을 감안”,
- “「**‘10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사업참여가 절실한 최저생계비 120%이하인자, 휴·폐업 자영업자와 실직자 중심의 **실업대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제해취약시설 정비 등 **친서민·생산적 사업위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http://www.mogaha.go.kr/>]

【참고 1】

행복한 책 읽기



도서명 : 인생사용설명서
 저자명 : 김홍신
 출판사 : 해냄
 출판년 : 2009년
 페이지 : 192
 가격 : 12,800원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물질적 욕구에 휘둘리거나,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남들처럼 살지 못해 괴로워하는 현대인들에게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한 ‘사용설명서’가 있다면 그 속에는 어떤 질문들이 담겨 있을까?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누구와 함께하겠는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겠는가’처럼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항상 되짚어봐야 할 물음을 통해 인생의 참 의미를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주는 『김홍신 인생사용설명서』는, 타인과의 비교에 치중해 존귀한 생명을 간과하는 이들에게 ‘인생 선배’ 김홍신 작가가 선사하는 삶의 지침서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밀리언셀러 작가, 뛰어난 언변과 열정을 품은 방송인, 8년 연속 의정평가 1등 국회의원 등 60여 년을 사회 곳곳에서 전방위적으로 활동해 온 저자는, 과욕과 허세 없는 삶 속에서 자신을 다잡은 김수환 추기경이나 만델라 대통령의 이야기를 통해, 원하는 목표를 노력 없이 얻으려다 인생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순간이

지극한 행복을 누려야 하는 시간임을 깨닫고 지금 당장 희망을 찾을 것을 권한다.

인생의 핵심이 되는 일곱 가지 질문에 맞춰 총 7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저자는 앞서의 질문들로 이야기를 펼쳐내 봄과 동시에 그간 세상에 꺼내놓지 않았던 비화들을 조금씩 내놓는다. 『인간시장』이라는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유명세를 얻게 된 이후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었을 때 분노하기보다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용서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다독였던 기억을 털어놓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소설로 형상화한 『김홍신의 대발해』를 8년여 동안 구상하고 집필한 까닭은 민족과 국가의 자존심이 울곧게 섰을 때 개인도 열등감을 훌훌 털어내고 자존심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역설한다.

지난해 100여 회의 대중 강의를 통해 삶의 방향을 잃고 고통에 휩싸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과 인생의 소중함을 설파한 저자가 그동안의 강의기록을 다듬고 고쳐 펴낸 이 책을 읽다 보면, 타인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삶, 지금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삶을 다시금 곱씹게 되어 나와 이웃과 세상이 행복해지는 희망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료출처 : 인터넷서점]

[MEMO]